

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

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29일

국립암센터 원장

1. 지원내용

프로그램	지원 분야	연구주제	지원 규모	비고
1. 암관리 근거 창출 연구	암 예방·관리연구 분야	1-1.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상의 주요 추진전략 관련 근거 마련 연구	1.5억원 이내, 2년 이내	RFP 1-1
		1-2. 국가암관리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		RFP 1-2
		1-3.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암 진료 및 생존자 지원체계 고도화 연구		RFP 1-3
		1-4.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현황 분석과 국제 동향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 마련 연구		FPF 1-4
2. 공익적 암 임상연구	한국형 암 임상연구 네트워크 (Korea Clinical Oncology Network)		5억원 이내, 5년 이내	RFP 2

➡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(붙임2) 참조

2. 추진일정

2025. 12. 29. (월)	사업 공고 (*결재일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)
2026. 01. 27. (화) 12:00	과제 신청(연구책임자 전산입력) 마감 (*결재일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)
2026. 01. 27. (화) 14:00	기관 전자인증(기관담당자) 마감 (*결재일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)
2026. 2월 중	사전검토 및 선정평가
2026. 3월 중	기획단 심의 및 예비선정과제 공고
2026. 3월 중	최종 선정과제 승인 및 수정계획서 접수
2026. 4. 1.	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

3. 신청요건

□ 연구기관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2항과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*)

*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 제외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
-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
□ 연구책임자 자격

- 프로그램별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
- 비정규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,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,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'임용확약서류'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연구책임자 자격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

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과제구성 요건

- 제안요청서(RFP)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할 수 있으며, 단독과제가 아닌 경우 각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(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)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주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(연구개발계획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대표로 작성)
-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주관·공동·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위탁과제는 주관연구개발과제만 구성할 수 있음
-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하며,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

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함

*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외의 경우,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신청 및 수행 제한

○ (신청제한)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의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
○ (수행제한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에 따른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
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

- 다만, 동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

※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사전검토를 실시하므로,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요망

○ (신청제한) 연구책임자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이미 수행 중인 연구자

- 다만,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예외로 함

- 기반 연구의 경우 필요시 사전 검토 및 복지부 승인을 통해 진행

○ (신청제한) 연구책임자로 국립암센터 소속인 연구자

-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국립암센터 소속 연구책임자 지정불가

* 단,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

○ (신청제한)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※ 모든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해 참여제한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하며,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
4. 신청방법

□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

○ 공고 및 접수처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(www.iris.go.kr)

○ 신청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 必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 제외)

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○ 과제 접수 매뉴얼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로그인 → 'R&D업무포털' 클릭 및 접속 → 'R&D고객센터'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전체 매뉴얼 다운로드

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□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분량 및 기한

- 분량 제한은 주관연구개발기관(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분량 포함) 기준으로 연구내용 중심 50페이지 이내로 적용하며,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항목별 분량 제한사항도 필수 준수 요망
-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- **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**되며,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 접수대상에서 제외됨
-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(마감 2일 전부터) 전산 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

□ 제출기한

- 연구책임자 과제신청(전산입력)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
 - 연구책임자 과제신청(전산입력) : **2026.01.27.(화) 12:00까지**
 -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: **2026.01.27.(화) 14:00까지**
- ➡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(소속기관)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므로,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

□ 제출서류
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전산파일

※ 신청 마감시간(14:00) 엄수 (마감 시간 이후 연장 불가)

※ 평가관련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및 암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(ncc.ncc.re.kr)를 통해 공지 예정

5. 기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

-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2025.3.6. 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함
-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14조(간접비고시비율 산출)에 따라 산출하며, 총연구개발비에 포함됨

□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%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
- 위탁정산수수료와 관련한 사항(수수료율 등)은 최종 선정 시 안내함

□ 예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

-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,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개발성과(논문게재, 특허 출원 및 등록, 사업화 등)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
-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

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(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)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 (그 외 기관 지원 포함)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= $\frac{\text{기관부담 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지원 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 연구개발비}} \times 100$			

※ 세부내용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 및 별표1 참조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심의 요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'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함
- 자세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참조

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해야 함
 - IRB 심의결과 제출·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- 소속기관 IRB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IRB에 확인

※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<http://irb.or.kr>, irb@nibp.kr)로 문의

□ 임상연구정보 CRIS 등록

- 등록대상 :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(임상시험)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(CRIS, <http://cris.nih.go.kr>)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※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(CRIS) 등록문의 : 043-249-3085

- 성과보고 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

- 임상연구정보서비스(CRIS,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)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, 운영하고 있음
-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(ICTRP)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(Primary Registry)으로 가입함에 따라,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

※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

- 등록시점: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
- 등록권한: 회원가입 후,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
- 임상연구정보 갱신: 임상연구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매 6개월마다 연구정보를 갱신하여야 함

□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·보고·공개

○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-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성과관리·유통 전담기관 운영

※ 관련규정 : 「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」

-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,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, 자원 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- 다만, 논문, 특허,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에 직접 등록하지 않고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등록

<연구개발성과의 등록·기탁 대상 및 범위>

구분	대상	범위
1. 등록	가. 논문	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(대회)지에 수록된 학술논문(전자 원문을 포함한다)
	나. 특허	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
	다. 보고서원문	연구개발 연차보고서,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
	라. 연구시설·장비	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(부가가치세 및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)의 연구시설·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·장비
	마. 기술요약정보	연차보고,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
	바.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	서열·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, 서열·구조·상호작용 등 단백질정보, 유전자(DNA)칩·단백질칩 등 발현체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
	사. 소프트웨어	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
	아. 표준	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,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[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(ISO, IEC, ITU)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]
2. 기탁	가.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	세균, 곰팡이,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,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·수정란 등 동물자원, 식물세포·종자 등 식물자원, DNA, RNA,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
	나. 화합물	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
	다. 신제품	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제품 및 관련 정보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[별표4]

6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」
- 「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」 등
 - ➡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

7. 문의처

- 홈페이지
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<https://www.iris.go.kr>
 - 암정복추진기획단사무국 <https://ncc.ncc.re.kr>
- 암정복추진기획단사무국

구분	TEL	e-mail
사업 공고, 평가	031-920-1083	kimhjung@ncc.re.kr
과제 관리, 협약변경, 시스템 관련	031-920-1085	yjin@ncc.re.kr
연구개발비	031-920-1082	csh@ncc.re.kr
연구성과	031-920-1084	chj@ncc.re.kr

8. 붙임

- 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
- 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서식
-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 사항